

# 선행학습 경험 학점인정(RPL) 운영 규정

제정 2026.02.09.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24조의1(학점인정)에 따라 선행학습 경험 학점인정(RPL)에 관한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및 범위)

- ① 선행학습 경험 학점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이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인정한다. 다만, 편입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군 복무 중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평생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우리 대학에서 개설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경우
- ②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하며, 각 유형별 인정 학점은 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인정 학점은 수강신청 학점 외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조 (전적 대학 학점인정)

- ① 전적 대학 학점인정이란 우리 대학 입학 전 국내·외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평생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을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전적 대학 학점인정은 매 학기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이 우리 대학 교과목 학점 이상인 경우와 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교양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의 이수 구분에 관계없이 해당 학번의 졸업기준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전공 학점인정은 전공 이수 교과목에 한해 인정한다.
- ④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편입생 학점인정 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4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 ①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이란 학생이 군 복무 중 이수한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이 가능한 과정을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학점인정은 교육·훈련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교양 교과목으로 인정하며, 학기당 3학점 이내, 연(년)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산업체 근무 경험 학점인정)

- ① 산업체 근무 경험 학점인정은 소속 계열(학과)의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개설·운영하는 전공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교과목 목표 및 교육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② 학기당 인정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산업체 근무 경험의 재직 기간에 따른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재직 기간	인정 학점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1년 이상 ~ 3년 미만	3	전공 교과목
3년 이상 ~ 6년 미만	6	
6년 이상 ~ 9년 미만	9	
9년 이상 ~ 12년 미만	12	
12년 이상 ~ 15년 미만	15	
15년 이상	18	

제6조 (교육프로그램 이수 학점인정)

우리 대학에서 개설한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양, 전공 교과목 내용과 유사한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 (학점인정 절차)

-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에 해당하는 신청 서식 및 증빙 서류에 대해 지도교수 및 계열(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
  - 1. 전적대학 학점인정
    - 가. 전적 대학 학점인정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 나.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강의계획서
  -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 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
    - 나.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3. 산업체 근무경험 학점인정
    - 가. 산업체 근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별지서식 제3호]
    - 나. 직무경험 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 다. 경력증명서
    - 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타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 마.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 4.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점인정
    - 가.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별지서식 제5호]
    - 나. 교육 이수 증명서(수료증)
- ② 교무처는 학점인정위원회를 통하여 제출 서류의 적합성 및 학점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 ③ 교무처는 학점인정 심의 결과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학생에게 안내하고, 학기말 성적에 반영한다.

제8조 (학점인정 평가)

- ① 학점인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P등급으로 기재하며, 취득 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백분율)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 ② 교과목명은 「(선행학습)교과목명」 으로 기재한다.

제9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점인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2026.02.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은 중전의 학점인정 규정을 「선행학습 경험 학점인정(RPL) 운영 규정」 과 「편입생 학점인정 운영 규정」 으로 분리·제정한 것으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중전의 학점인정 규정은 폐지한다.







[별지서식 제4호]

## 직무 경험 기술서

계열(학과)		학년	
성명		학번	
기관명		부서명 (담당업무)	
근무 년수		근무 기간	
직무 경험			

신청인

(서명)

